

부정·부패 관련 특별 신고 안내

□ 내부 비리신고

- 방통위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를 통해 부패 행위 방지 및 청렴성 제고
 - ※ 공무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신고방법
 - 온라인 : 청렴플러스(방통위 지식기반시스템) → 비리신고 → 등록 → 비리내용 작성 → 확인
 - 전 화 : 행동강령담당관(운영지원과장, 1310)이나 감사담당(사무관, 1347)에게 비리내용 제보

□ 내·외부 청탁신고

- 업무수행 중 받게 되는 부당하고 거부하기 곤란한 청탁에 대해 신고하여 부당한 청탁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,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방통위의 정책 신뢰성 제고
 - ※ 청탁신고시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
- 신고방법
 - 온라인 : 청렴플러스(방통위 지식기반시스템) → 청탁신고 → 등록 → 청탁내용 작성 → 확인
 - 전 화 : 행동강령담당관(운영지원과장, 1310)이나 감사담당(사무관, 1347)에게 청탁내용 제보 및 상담

□ 공익신고
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통하여 행정·감독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를 사전 예방

* 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·허가 취소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위반행위

예시 : 무자격자 의료행위(의료법), 교량 부실시공(시설물안전법), 폐기물 불법 매립(자연환경보전법), 유사석유 판매(소비자 기본법) 등

○ 신고방법

- 온라인 : 청렴플러스(방통위 지식기반시스템) → 공익신고 → 등록 → 공익침해내용 작성 → 확인
- 전 화 : 행동강령담당관(운영지원과장, 1310)이나 감사담당(사무관, 1347)에게 공익침해 제보 및 상담